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21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천준호·이동주·김경만

김승원 • 양정숙 • 박완주

이상직 • 고민정 • 정성호

장철민 · 윤재갑 · 안규백

송옥주 • 문진석 • 이용우

안호영 · 임오경 · 김종민

김수흥 · 이인영 · 허 영

윤미향 · 민병덕 · 유동수

윤영덕 • 임종성 • 정필모

장경태 • 서동용 • 서삼석

이성만 • 박홍근 • 황운하

고영인 · 김두관 · 이은주

이규민 · 송영길 · 인재근

김경협 · 맹성규 · 문정복

서영석 의원(4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, 폭행 등으로 인한 건 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 무 중단 또는 전환,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사업주 도 사전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함.

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. 이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(안 제41조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"한다)에"를 "한다)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(이하 "공동주택 근로자"라 한다)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고객응대근로자"를 "고객응대근로자 및 공동주택 근로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고객응대근로자는"을 "고객응대근로자 및 공동주택 근로자 및 공동주택 근로자는"의 "고객응대근로자 및 공동주택 근로자는"의 "고객응대근로자 및 공동주택 근로자는"의 "고객응대근로자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	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
건강장해 예방조치) ① 사업주	건강장해 예방조치) ①
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	
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	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	
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	
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	
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	
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	
자(이하 "고객응대근로자"라 <u>한</u>	<u>한</u>
<u>다)에</u> 대하여 고객의 폭언, 폭	다)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
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	서 종사하는 근로자(이하 "공
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	동주택 근로자"라 한다)에
발하는 행위(이하 "폭언등"이라	
한다)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	
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	
를 하여야 한다.	
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	②
로 인하여 <u>고객응대근로자</u> 에게	<u>고객응대근로자</u>

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 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및 공동구택 근도사
③ 고객응대근로자 및 공동주
<u>택</u> 근로자는
고객응대
근로자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-
·